

## [서식 예]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약물쇼크 사고, 공동불법행위책임)

# 소 장

- 원 고 1. 000 (주민등록번호)
  - 2. ○①○ (주민등록번호)
  - 3. ○②○ (주민등록번호)
  - 위 원고들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우편번호)
  - 위 원고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손해배상(의)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금 ○○○원, 원고 ○①○, 원고 ○②○에게 각금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들 관계

#### 가. 원고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의 남편이고, 원고 ○
①○. 원고 ○②○는 소외 망 ●●●의 자식들입니다.

### 나. 피고들

피고 ◇◇◇◇는 ○○시 ○○구 ○○길 123의 45에서 ◇◇◇의원이라는 상호를 개설하여 외과 등을 영리목적으로 경영하는 외과전문의사로서 피고 ◈◆◆의 사용자이고, 피고 ◆◆◆◇는 위 ◇◇◇의원에서 피고 ◇◇◇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의사입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사건의 경위

피고들은 20○○. ○. ○. 15:00경 ○○시 ○○구 ○○길 123의 45 소재 ◇◇◇의원에서 소외 망 ◉●●의 폐렴에 대한 치료를 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피고들로서는 문진, 사진, 촉진 등의 방법과 아울러 위 망인의 체온 및 혈압측정, 혈액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소외 망 ●●●의 정확한 병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약을 투약하여 약물쇼크사고를 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망 ●●●가 오한, 구토, 메스꺼움, 두통 등을호소하자 단순히 위염 및 신경증 증세로 오진한 채 폐렴환자에게는 호흡억제부작용이 있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마약 계통의 진통제인 펜타조신 30㎜을 주사한 과실로 소외 망 ●●●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15경 펜타조신약물쇼크에 의한 호흡부전, 심부전 등의 증세로 사망케 한 것입니다.

### 나. 피고들의 책임

피고 ◇◇◇◇는 소외 망 ◉◉◉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한 위염 증세로 오진하였고, 피고 ◈◈◈는 소외 망 ◉◉◉가 재차 같은 증세를 호소 하며 다시 위 ◇◇◇의원을 찾아오자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 ◇◇◇〉가 오진 한 위염에 대한 진통을 목적으로 타조신을 주사한 잘못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소외 망 ◉◉●와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진료하고 진상에 알맞은 처방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진료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소외 망 ◉◉●에 대하여 오진 및 잘못된 처방을 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 ◇★★ 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 다. 피고들은 소외 망 ◉◉●에 대한 진찰결과 및 그에 따른 처방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약효는 물론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소외 망 ◉◉●의 자 기결정권에 기한 승낙을 받은 후 투약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 가. 연령, 성별, 기대여명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는 19○○. ○.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 ○. ○. 현재 32년 6개월된 신체 건강한 여자로서 그 또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기대여명은 앞으로 48.38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세까지는 생존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나. 직업 및 수입관계

소외 망 ●●● 원고 ○○○와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돌보며 생활하는 가정주부로서 그에 대한 수익사실의 입증이 곤란하므로 최소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20○○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시보통인부의 1일 노임은 금 ○○○원이고, 통상 월 22일간은 가동할 수가 있다 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월평균 금 ○○○원(금 ○○○원(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노임단가)×22일)의 수익이 예상되나 소외 망 ●●●가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생계비로 1/3을 공제하면 매월 금 ○○○원(월평균금 ○○○원×2/3, 원미만 버림)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 다. 가동연한 및 일실수익 손해금

소외 망 ●●●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통상 가동연한이 60세가 다할 때까지 27년 6개월, 즉 월로 환산하면 330개월 동안은 위 월평균 수익금 이상을 올릴 수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위 월평균 수익금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는바, 이를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현가를 산출하면 금 ○○○원(금 ○○○원(월평균수입)×207.3101(330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 원미만 버림}이 됩니다.



#### 4. 장례비

소외 망 ●●●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영안실비, 장의차량비, 기타 비용 포함)로 금 3,000,000원이 소요되어 망인의 남편인 원고 ○○○가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장례비로 청구합니다.

####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 원고 ○○○와 결혼하여 딸인 원고 ○①○, 원고 ○②○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오다 이 사건 폐렴치료시 피고들의 잘못으로 비참하게 사망하고 말았으니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충과 비애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광경을 지켜 본 남편과 자녀들 역시 그 슬픔과 괴로움은 이 세상 다하도록 잊을 날이 없다 할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 은 이들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한다면 소외 망 ●●에게 금 ○○○원, 원고 ○ ○○에게 금 ○○○원, 원고 ○①○, 원고 ○②○에게 각 금 ○○○원의 위자료 를 각자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 6. 상속관계

소외 망 ●●●의 손해배상채권 금 ○○○원(금 ○○○원(일실수입)+금 ○○○원(위자료))은 그의 상속인인 원고 ○○○에게 3/7(금 ○○○원=소외 망 ●●의 손해배상채권 금 ○○○원×3/7), 원고 ○①○, 원고 ○②○에게 각 2/7 (금 ○○○원=소외 망 ●●●의 손해배상채권 금 ○○○원×2/7)의 비율로 각 상속되었습니다.

## 7. 결론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5호증의 1, 2 한국인의표준생명표지 및 내용

1. 갑 제6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1. 000 (서명 또는 날인)

2. 010

3. 020

원고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〇〇〇(서명 또는 날인)

## ㅇㅇ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w	소멸시효기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1)참조	제 척 기 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타	<ul> <li>•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수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li> <li>•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중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중하고 그 결과와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음(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의 판결).</li> </ul>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지연손해금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료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2) 소멸시효 등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또는 계약책임)」이 경합하게 됨. 즉, 치료가 잘못되어 병 세가 악화되게 되는 경우 그것은 과실로 인하여 신체를 침해한 것이 되어 불 법행위의 성립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완치 또는 병세가 호전되도록 치료해 줘야 할 치료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 문임. 그런데 이처럼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면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 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그러나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 으로서 위법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 으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손해배상청구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중 어느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을 원칙으 로 하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 있음을 입 증하여야 하지만(다만, 사용자책임의 경우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과실 없 음을 입증하여야 함),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 실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고,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없 음을 입증하여야 함. 또한,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하나(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 으로써 소멸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 54269 판결). 참고로 의료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경우 고용의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지만,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고용의사는 이행보조자가 될 뿐이고, 병원만이 상대방이 될 것임.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